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이광희 · 민병덕
이수진 · 김남근 · 김우영
양부남 · 민형배 · 신정훈
최혁진 · 이건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(洞)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, 농산어촌 지역인 읍·면(邑·面)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.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·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,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·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,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
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·제12호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 중 “구를”을 “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·면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의2 중 “중”을 “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·면 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“인구감소지역”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)·군·구를 대상으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	1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구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·면을----- -----.
12의2. “인구감소관심지역”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(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, 특별자치시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	12의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·군·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, 65세 이상 고령인구,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13. ~ 18. (생략)	-----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(都農)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·면 중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3. ~ 18. (현행과 같음)
---	--